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신속평가 결정 요청을 위한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속평가 결정 요청을 위한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구체화 (안 제8조 개정)

신속평가 대상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고시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영 제67조의2에 따른 심층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해당 여부(법 제52조의2제1항 및 영 제67조의2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법 제52조의3제1항 및 영 제67조의5에 따른 신속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해당 여부(법 제52조의3제1항 및 영 제67조의5에 따른 신속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9.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영 제67조의2에 따른 심층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해당 여부(법 제52조의2제1항 및 영 제67조의2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10. 법 제52조의3제1항 및 영 제67조의5에 따른 신속평가 검토대상 및 기준 해당 여부(법 제52조의3제1항 및 영 제67조의5에 따른 신속평가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